개인정보보호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콘텐츠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방안, 개인정보 침해로 구분하여,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무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보호 1
1. 개인정보보호 개관 4
1.1. 개인정보보호제도 알아보기 4
1.1.1.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4
1.1.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8
2.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방안 11
2.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1
2.1.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방법 11
2.1.2. 개인정보의 제3자로의 이전 17
2.2. 개인정보의 관리 20
2.2.1.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20
2.2.2.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의 처리 22
2.2.3. 개인정보의 파기 26
2.3.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27
2.3.1. 개인정보처리자의 민감정보 처리 27
2.3.2.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30
2.3.3. 개인정보처리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33
2.4. 가명정보의 처리 38
2.4.1. 가명정보의 처리 등 38
3. 개인정보 침해 41
3.1. 정보주체의 대응방안 41
3.1.1.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 41
3.1.2. 정보주체의 손해배상 및 행정소송 45
3.1.3. 정보주체의 집단적 대응방안 47
3.2.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처방안 52
3.2.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52
3.2.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54
3.2.3. 개인정보 유출시의 조치방안 58

1. 개인정보보호 개관

1.1. 개인정보보호제도 알아보기

1.1.1.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개인정보란?

개인정보의 개념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함)
3. 1. 또는 2.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함)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 ※ **개인정보의 구체적 예**
>
> √ 신분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 등
>
> √ 내면의 비밀: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
>
> √ 심신의 상태: 건강상태, 신장, 체중 등 신체적 특징, 병력, 장애정도 등
>
> √ 사회경력: 학력, 직업, 자격, 전과 여부 등
>
> √ 경제관계: 소득규모, 재산보유상황, 거래내역, 신용정보, 채권채무관계 등
>
> √ 기타 새로운 유형: 생체인식정보(지문, 홍채, DNA 등), 위치정보 등
>
> (출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 제도안내-개인정보 의미)

개인정보의 유형

▪ 개인정보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유형구분	개인정보 항목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가족정보	가족구성원들의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교육 및 훈련정보	학교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상벌사항
병역정보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부동산정보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등
소득정보	현재 봉급액, 봉급경력, 보너스 및 수수료, 기타소득의 원천, 이자소득, 사업소득
기타 수익정보	보험 (건강, 생명 등) 가입현황, 회사의 판공비, 투자프로그램, 퇴직프로그램, 휴가, 병가
신용정보	대부잔액 및 지불상황, 저당, 신용카드, 지불연기 및 미납의 수, 임금압류 통보에 대한 기록
고용정보	현재의 고용주, 회사주소, 상급자의 이름, 직무수행평가기록, 훈련기록, 출석기록, 상벌기록, 성격 테스트결과 직무태도
법적정보	전과기록, 자동차 교통 위반기록, 파산 및 담보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납세기록
의료정보	가족병력기록, 과거의 의료기록, 정신질환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 각종 신체테스트 정보
조직정보	노조가입, 종교단체가입, 정당가입, 클럽회원
통신정보	전자우편(E-mail), 전화통화내용, 로그파일(Log file), 쿠키(Cookies)
위치정보	GPS나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신체정보	지문, 홍채, DNA, 신장, 가슴둘레 등
습관 및 취미정보	흡연,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비디오 대여기록, 도박성향

(출처: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 제도안내-개인정보 의미)

※ 판례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인정보보호의 주요 주체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 “공공기관”이란 다음의 각 기관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2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처리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3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조제3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4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조제4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5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6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7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8항).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사본의 발급 포함)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등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동의 필요시 법정 대리인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수집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이용 및 제공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2)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3자에의 제공(「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
	관리(보관)	안전성 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보호책임자의 지정(「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유출 통지와 신고(「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파기	파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1.1.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판례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 두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 등).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방지 10계명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방지 10계명

▪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정보주체 각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10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	10계명	내용
1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꼼꼼히 살피기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약관을 꼼꼼히 살핍니다.
2	타인이 유추하기 어려운 안전한 비밀번호 사용	회원가입 시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하기 어렵도록 영문/숫자 등을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3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변경 시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재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4	본인확인은 주민번호 대신 대체수단 사용	비대면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이핀(I-PIN), 휴대폰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활용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5	명의도용확인 서비스 이용하여 가입정보 확인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신규 회원가입 시 즉각 차단하고, 이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명의도용 확인서비스를 이용합니다.
6	개인정보는 친구에게도 알려주지 않기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하며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7	P2P 공유폴더에 개인정보 저장하지 않기	인터넷에 올리는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P2P로 제공하는 자신의 공유폴더에 개인정보 파일이 저장되지 않도록 합니다.
8	금융거래는 PC방에서 이용하지 않기	금융거래 시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금융 정보 등을 저장할 경우 암호화 하여 저장하고, 되도록 PC방 등 개방 환경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9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는 다운로드금지	인터넷 또는 문자, 메신저 등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URL) 또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악성코드 감염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개인정보 침해신고 적극 활용하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신고 또는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개인정보보호란?-개인정보 수칙)

2.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방안

2.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2.1.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방법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처리의 개념

▪ “개인정보의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

>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3.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방법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1호).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 개인정보처리자는 위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이나 이용·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

-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위의 통지는 다음의 정보주체를 제외한 정보주체에게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 통지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정보주체
-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그에 소속된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해당 정보주체
-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다른 공공기관, 법인, 단체의 임직원 또는 개인의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해당 정보주체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이용·제공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이용·제공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와 그 제공 목적,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의 정보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3제3항 본문).

▪ 정보주체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면·전자우편·전화·문자전송 등의 방법과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알림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제2항).

>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2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제3항).

▹ 이를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1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을 포함)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1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 개인정보의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에게 제공 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민감정보의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위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제1항·제2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3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는 방법에 관한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동의를 얻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4항제3호).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7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 그 밖에 위의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거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에게 제공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및 재화·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5항).

- 이를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1호).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의 모든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1항).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의 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2호).

▪ 위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위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2항 본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 전단).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2항 단서).

▹ 위 1, 2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 목적 및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면·전자우편·전화·문자전송 등의 방법과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알림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통지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제3항).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 전송요구대상정보 전송 내역의 통지

▪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의 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2호).

▪ 다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 단서).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또한, 1, 2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다음의 사항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관리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제4항).

▹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 알린 시기

▹ 알린 방법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위의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4항 및 제32조제2항).

▹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

√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목적 외 이용·제공의 제한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 대한 제공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5.부터 9.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3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함)

√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함)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

2.1.2. 개인정보의 제3자로의 이전

개인정보의 제3자에의 제공

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함. 이하 같음)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경우. 이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위의 각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1항 및 제5항).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집한 개인 정보를 그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집한 개인 정보를 그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4.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집한 개인 정보를 그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6.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위 2.부터 6.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1호).

>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3.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제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함)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이를 위반하여 업무위탁 시 위의 각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4항제4호).

위탁자의 수탁자 교육·감독의무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6항).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5항).

▹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

▪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6항).

▪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7항).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개인정보 이전 통지의무

▪ 영업양도자등의 통지의무

▹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의 사항을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 등의 방법”이라 함)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

√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함)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함),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자(이하 "영업양도자등"이라 함)가 과실 없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위의 각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위의 각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영업소·사무소·점포 등(이하 "사업장등"이라 함)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

√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 영업양수자등의 통지의무

▹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위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4항제6호).

이전받은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3항).

▹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

2.2. 개인정보의 관리

2.2.1.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3. 위 1. 또는 2. 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
>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
>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항 및 별지 제8호서식).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5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정보주체는 그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제5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4항제1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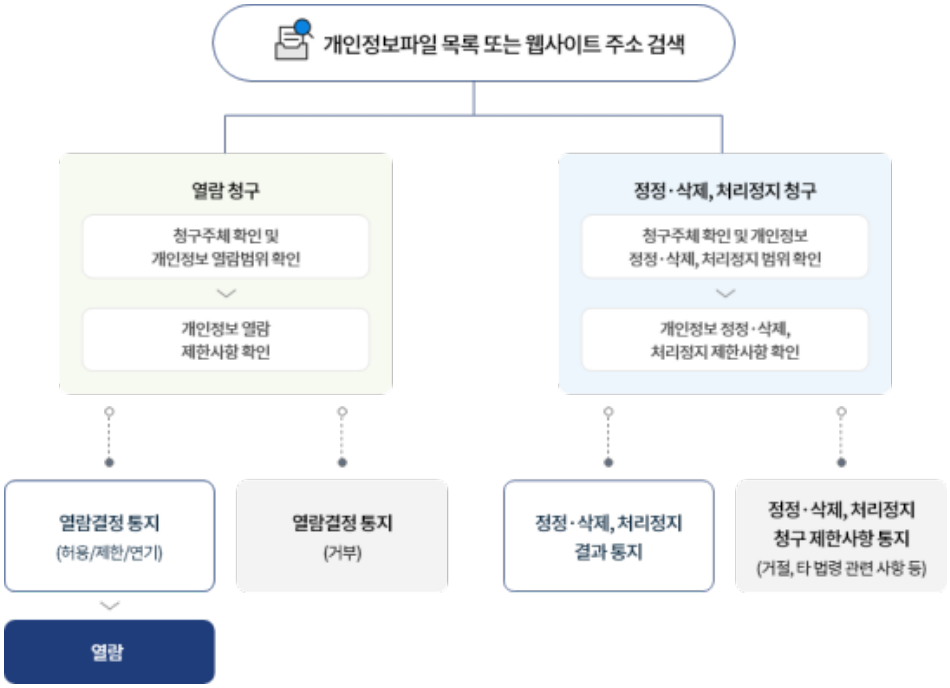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개인정보처리의 정지·동의 철회 요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6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개인정보 민원신청 절차>



(출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개인서비스-정보주체 권리행사-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 정지 청구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을 통해 직접 신청(오프라인)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s://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2.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의 처리

개인정보 열람신청 등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개인정보의 열람절차와 열람 연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5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
-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3.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 전단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시간 및 장소 등을 열람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즉시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5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제4항 및 별지 제9호서식).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열람의 연기·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 후단·제5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제42조제2항,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제4항 및 별지 제9호서식).

▪ 이를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19호·제4항제10호).

개인정보 열람 제한 및 거절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4항제10호).

▪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열람 제한 및 거절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5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시간 및 장소 등(일부 열람을 하게 하는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포함함)을 일부열람 통지서로, 열람을 연기하거나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열람의 연기·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5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제42조제2항,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제4항 및 별지 제9호서식).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75조제2항제22호).

▸ 위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

▪ 개인정보처리자는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5항).

▪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정정·삭제하거나 그 개인정보 정정·삭제에 관한 요구사항을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3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를 한 사실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2항·제6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제5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개인정보처리 정지·동의 철회 요구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정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 본문).

▸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제1항제2호).

▹ 위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3항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23호).

▪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를 한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6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제5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5항).

▹ 이를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23호).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

※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제1항제2호).

※ 위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

▪ 개인정보처리자는 위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 이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4항·제6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제5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4항제10호).

개인정보 열람 등의 거부에 대한 정보주체의 대처방안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이의 제기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5항).

손해배상의 청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히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1항 후단).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합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 법원은 법정손해배상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해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2항).

▹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3항).

▪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항).

행정심판 청구

▪ 개인정보의 열람 거부 등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조 참조).

행정소송 제기

▪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등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3조 참조).

>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3.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본문).

▹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4호).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3.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2항).

▪ 개인정보의 파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제2항).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전용 소자장비 이용,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는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등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

▹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완전 파기가 어려울 경우 해당 부분을 마스킹, 구멍 뚫기 등으로 삭제)

개인정보의 보존

개인정보의 분리 저장·관리

▪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단서·제3항).

▹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4항제2호).

2.3.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2.3.1. 개인정보처리자의 민감정보 처리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민감정보의 개념

▪ “민감정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본문).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 그러나 공공기관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다음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단서).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개인정보 제공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3.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 이를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4호).

▹ 위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

▪ 개인정보처리자가 위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5호).

▪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3항).

▹ 이를 위반하여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리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6호).

▪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감정보를 처리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3호).

▹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6조).

※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개인정보 침해-개인정보처리자의 대처방안-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2.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고유식별정보”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본문).

▹ 그러나 공공기관이 위의 정보를 다음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단서).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개인정보 제공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3. 위 1. 또는 2. 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 이를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5호).

▹ 위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의 경우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로 정하는 경우

※ 이를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7호).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3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8호·제9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30조제1항).

1. 고유식별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2.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이하 “고유식별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접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수단 적용 기준의 설정 및 운영
	그 밖에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	고유식별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고유식별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의 차단. (다만,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고유식별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만 해당)
	그 밖에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고유식별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하는데 필요한 조치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등 인증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주민등록번호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5. 고유식별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고유식별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의 저장·점검 및 이의 확인·감독
	고유식별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
	그 밖에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6. 고유식별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해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설치·운영과 주기적 갱신·점검 조치	
7. 고유식별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이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5호).

▪ 이를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4호).

▹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6조).

> ※ 안정성 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개인정보 침해-개인정보처리자의 대처방안-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3. 개인정보처리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다음의 장치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1.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2. 위 1.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다음의 장치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의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착용형 장치: 안경 또는 시계 등 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 휴대형 장치: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디지털 카메라 등 사람이 휴대하면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 부착·거치형 장치: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공개된 장소에서의 설치·운영 금지

▪ 누구든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출입자 수, 성별, 연령대 등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이를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10호).

▪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을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 **Q.** 상가건물 5층에 위치한 상가 주인이 마음대로 상가건물 공용 엘리베이터 내부에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 이용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내부를 개인적으로 촬영하는 것이 맞나요?
>
> **A.**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의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치·운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이 사례의 경우 상가 공용 엘리베이터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볼 수 있고, 필요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허용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용 엘리베이터의 CCTV

> 설치·운영은 상가 공용 공간을 관리하는 권한이 있는 자(예로, 상가관리사무소 등)가 설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
>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법 상담사례집(2019), 71쪽 참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함)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합니다. 다만,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제3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의2).

>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의 안내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 산불감시용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의 안내 사항을 게재할 수 없으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안내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영업소·사무소·점포 등(이하 "사업장 등"이라 함)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 관보(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함)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Q. 지하철 OO역내의 매장에 별도의 안내문 없이 CCTV를 설치하여 행인들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CCTV 촬영 중 이라는 종이는 붙여 놓았지만, 절도행위 금지 문구만 있지 어디에도 CCTV 안내판은 보이지 않습니다.

A. 정보주체가 CCTV 설치·운영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이 사례의 경우 'CCTV 촬영 중'이라는 표식 또는 CCTV 그림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CCTV 설치·운영 안내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당 업체는 절도 등의 범죄예방 및 수사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려면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등의 항목을 기재하여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법 상담사례집(2019), 68쪽)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설치·운영 금지

▪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 본문).

▹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교정시설,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 단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1항제1호).

▪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범죄, 화재,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해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의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7조).

▹ 이를 위반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1항제2호).

설치 목적 외 임의조작과 녹음의 금지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

▹ 이를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제1호).

Q. 앞집에서 설치한 CCTV가 설치 목적과 다르게 저희 집 대문 쪽을 비추고 있어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A.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 이 사례의 경우 범죄예방대책을 위한 목적 등으로 CCTV를 설치하였다면 그 목적에 맞게 CCTV 촬영 방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타인 주택의 출입문을 비추어 타인의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
>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법 상담사례집(2018), 84쪽 참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6항).

> ※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개인정보 침해-개인정보처리자의 대처방안-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7항 전단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그 밖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공개된 장소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고 하거나 교도소·정신보건 시설 등에서 내부가 보이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3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 해당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8항 본문).

▪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8항 단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 위탁받는 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이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및 사업장 등에 공개할 때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2.4. 가명정보의 처리

2.4.1. 가명정보의 처리 등

가명정보의 처리

가명정보 개념

▪ 가명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함)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가명정보의 처리 등

가명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위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2항).

※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

>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

- 이를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가명정보를 결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6호).

▪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2항 및 제58조의2).

※ 이를 위반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결합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7호).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제1항).

- 안전성 확보 조치
-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다만, 추가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정보를 파기해야 함
-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분리.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가명정보를 취급할 자를 추가로 둘 여력이 없는 경우 등 접근 권한의 분리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 권한만 부여하고 접근 권한의 보유 현황을 기록으로 보관하는 등 접근 권한을 관리·통제해야 함

※ 이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5호).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제2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함)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가명정보를 파기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제3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제2항).

-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이를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4항제7호).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제1항).

▹ 이를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8호).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결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제2항).

▹ 이를 위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않거나 이를 회수·파기하지 않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13호).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6호).

▹ 위에 따른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3항).

▪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 단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

▹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거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3. 개인정보 침해

3.1. 정보주체의 대응방안

3.1.1.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상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제1항·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9조).

>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3.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
>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상담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이용안내>.

순서	절차	내용
1	신고·상담 신청 대상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
2	신고·상담 신청 접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를 통한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우편도 가능합니다. - 우편: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3	상담	- 인터넷,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된 상담은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답변합니다. 법률 상담 또는 접수요건 미달 등에 해당될 경우 침해상담으로 처리되어 접수번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답변은 신고인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화를 통하여 추가내용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전화로 접수된 상담은 그 즉시 상담원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종결합니다.
	침해행위 사실 확인 및 시정 유도	- 침해행위 사실 확인 및 시정 유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속한 시정 유도로 신고인의 침해받은 개인정보 권리 및 이익을 구제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 침해행위 사실 확인 및 시정 유도는 신고인의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서술 및 증거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 따라서 서면 접수가 원칙이며, 다음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개인정보처리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유도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① 사실관계 서술이 모호한 경우 ②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③ 침해 내용이 신고인의 일방적 주장에 그치는 경우 등 - 침해행위 사실 확인 및 시정 유도 결과를 통지 받은 신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신고의 방식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	- 행정조사는 침해행위 사실 확인 및 시정 유도 과정에서 조사 과정으로 전환된 날짜로부터 12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침해행위 사실 확인 및 시정 유도 과정에서 고충 해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행정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행정조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행정조사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추진되며, 중립적·객관적인 입장에서 자료제출 요구 또는 검사 등의 조사를 수행합니다. - 이에 따른 행정조사 결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보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조사 결과를 통지 받은 조사대상자는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 ☎ 11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분쟁조정의 신청

▪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함)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1항).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

▪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2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3항).

▪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4조제1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4조제1항 단서·제2항).

▪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제1항).

-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제2항).

-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제4항).

-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제5항).

▪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6조).

▪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1항).

-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2항).

▪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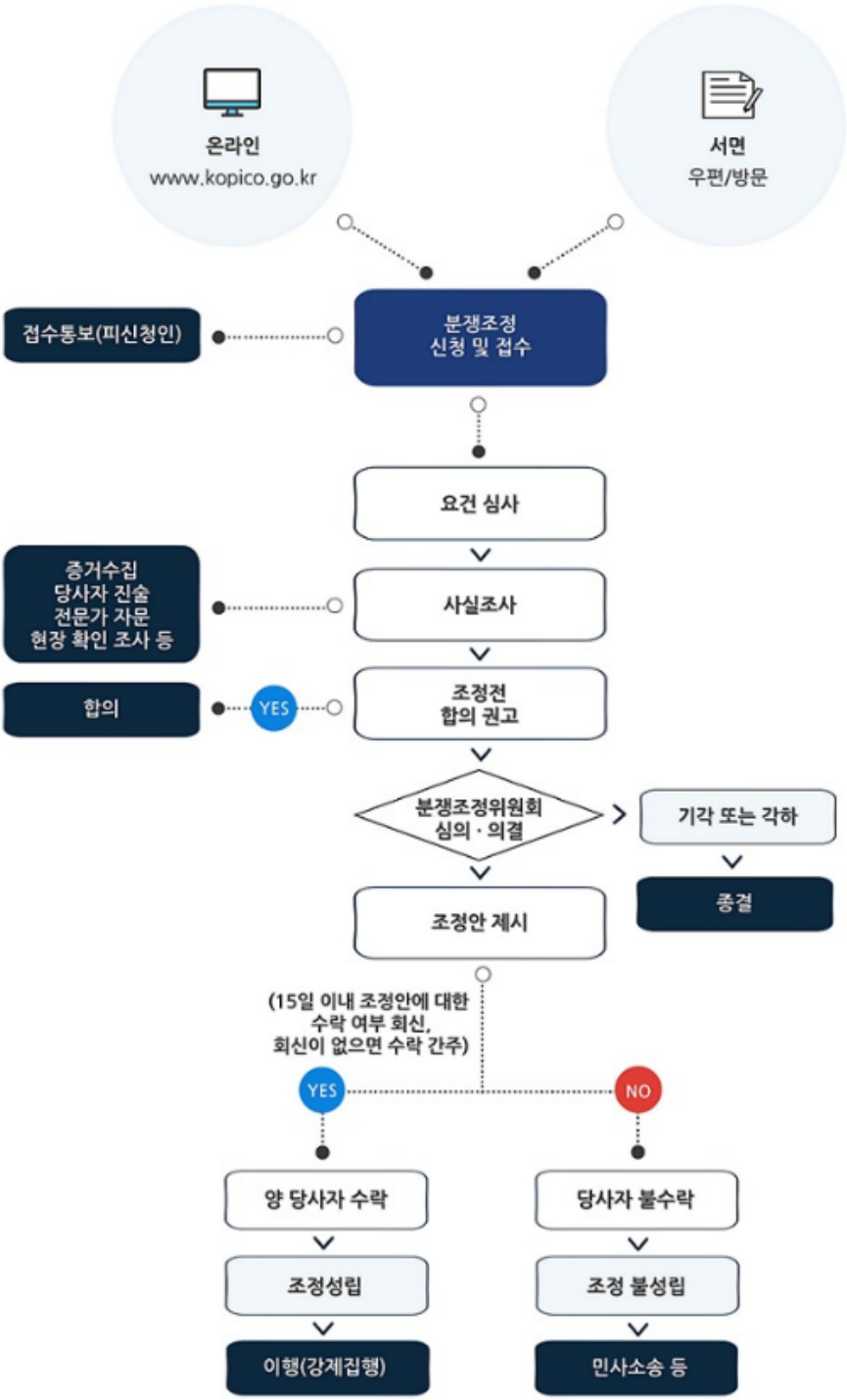
▪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아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4항).

▹ 이 경우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5항).

▪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제1항).

▹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제2항).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



(출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 제도안내-분쟁조정제도)

※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https://www.kopic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2. 정보주체의 손해배상 및 행정소송

손해배상의 청구

손해배상의 청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1항).

>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
>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 법원은 법정손해배상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해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2항).
-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3항).

>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3.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항·제4항).

-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 위반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 규모
- 위법행위로 인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 청구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소송 제기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 등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3조).

>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3. 정보주체의 집단적 대응방안

집단분쟁조정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함)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함)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2조).

-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다음의 정보주체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일 것
  - √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주체
  - √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주체
  - √ 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정보주체
-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
>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제2항 전단).

> ※ “분쟁조정위원회”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두는 기관으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제1항·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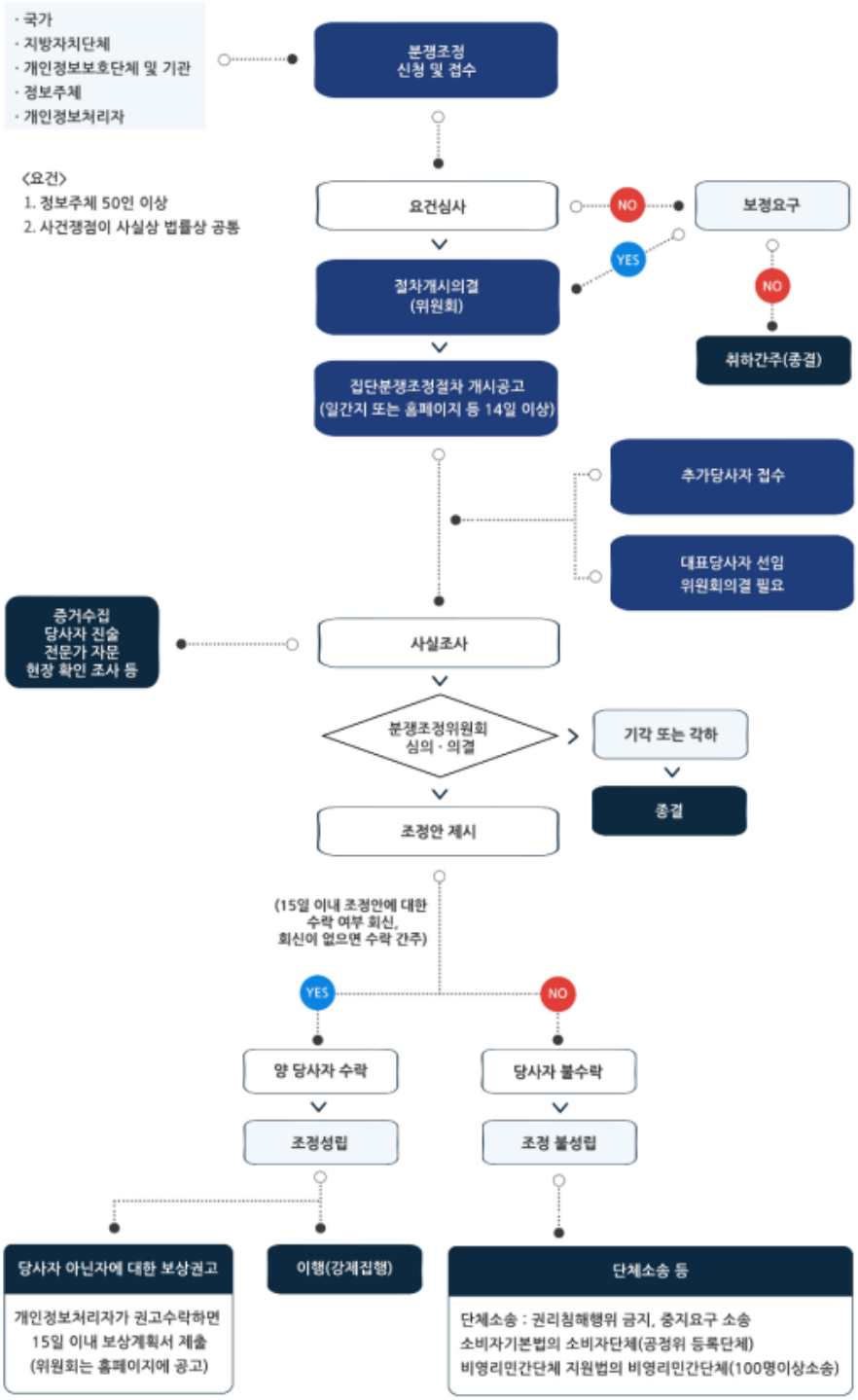
절차개시의 공고

▪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14일 이상의 기간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분쟁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제2항 후단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3조).

대표당사자의 선임

▪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제4항).

<집단분쟁조정절차>



(출처: 개인정보 포털-개인서비스-분쟁조정-제도안내-집단분쟁조정)

※ 집단분쟁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https://www.kopic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단체소송

단체소송의 제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함)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

▹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관할

▪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2조제1항).

▹ 외국사업자의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2조제2항).

소송대리인의 선임

▪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3조).

제출 서류

▪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다음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4조,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제4조, 제5조 및 제6조).

제출서류	내용	
소장	원고 및 소송대리인, 피고, 청구의 취지와 원인	
소송허가신청서	원고 및 소송대리인, 피고, 허가신청의 취지와 원인, 정보주체의 침해된 권리의 내용	
별첨자료	소명자료	-소비자단체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1. 단체의 정관 2.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3. 소비자단체로 등록한 사실 및 등록일자를 소명하는 서면
		-비영리민간단체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1. 단체의 정관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활동실적 3.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음을 소명하는 서면 5.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한 정보주체의 이름·주소와 연락처(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 6. 5.의 정보주체들이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한 서면(각 정보주체별 침해의 내용과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해야 함)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5조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않았을 것
  -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5조제2항).
  -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7조제2항).

확정판결의 효력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6조).

▸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3.2.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처방안

3.2.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내용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접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수단 적용 기준의 설정 및 운영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의 차단. (다만,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만 해당)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하는데 필요한 조치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등 인증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주민등록번호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또는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그 밖에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5.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의 저장·점검 및 이의 확인·감독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
	그 밖에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해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설치·운영과 주기적 갱신·점검 조치	
7.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3.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 이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5호).

▪ 이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 구축·운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 구축·운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개인정보 영향평가(https://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담당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1항 본문).

▹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14호의2).

>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3.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
>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 종업원 수, 매출액 등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1항 단서·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5명 미만일 것(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업무 및 독립성 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10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전단).

구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공공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2. 1.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3. 1. 및 2.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4. 1.~ 3.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5. 시·도 및 시·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6. 시·군 및 자치구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7.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직원)
	8. 1.~7.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업주 또는 대표자 √ 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와 「상법」 제408조의2제1항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하며,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14호의2).

※ 개인정보처리자의 준수 사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는 ①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이사회(법인인 경우로 한정)의 의결을 거칠 것, ②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것을 준수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 연간 매출액등이 1,800억원을 초과하는 자(「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외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전년도 말 기준 재학생 수(대학원 재학생 수를 포함)가 2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공공시스템운영기관

- 위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는 위 표에 따른 사람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후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관리 및 예산의 확보

▹ 사업주 또는 대표자 및 이사회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현황 및 주요 사항의 보고

▹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 및 보호를 위하여 정한 다음의 업무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의 관리

√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위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5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6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7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 정보의 교류,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8항).

▹ 보호위원회는 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9항).

※ **개인정보 보호 인증**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는지 보호위원회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제1항).

√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실효성 유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제2항·제4항).

※ 개인정보 보호 인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ISMS-P(isms-p.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3. 개인정보 유출시의 조치방안

개인정보의 유출

개인정보의 유출이란?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3.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피해구제

개인정보 유출등 통지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이하 “유출등”이라 함)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이라 함)으로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등에 관한 다음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본문, 제5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본문).

-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개인정보 유출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및 분쟁조정 등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와 그 행사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

-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해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는 위에 따른 통지를 하려는 경우로서 구체적인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과 유출등이 확인된 사항만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통지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의 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17호).

개인정보 유출등의 가능성 통지

▪ 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및 유출등의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①유출등의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 ②유출등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 또는 인정되는 시점과 그 경위, ③「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④유출등의 여부가 확정될 경우 추가 통지를 하겠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의2).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이 발생하여 개인정보 유출등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나 그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불법적인 접근을 알게 된 때

▹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에 의해 거래되는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다른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도 유출등이 되었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때

▪ 개인정보처리자는 위의 구분에 따른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서면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의3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위에 따른 기한 내에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등이 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통지에 갈음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의3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등의 사항을 알리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17호).

▪ 위에 따른 통지를 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등이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의3제3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의3제4항).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회수·삭제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3항).

개인정보 유출등에 대한 신고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4항 전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 이를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18호).

※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 방법

구분	개인정보 유출 신고		침해사고 신고	개인정보 침해 신고
신고대상	개인정보처리자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상거래 기업 및 법인 (금융위 감독을 받는 곳은 제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일반이용자 (정보주체)
근거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
신고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KISA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KISA	과기정통부 및 KISA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신고기한	72시간 이내	72시간 이내	즉시	-
신고기준	-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1만명 이상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누설)된 경우	-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시
과 태 료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사업소개-개인정보본부-침해사고 예방·신고-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 및 상담)

※ 개인정보 유출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기업·공공 서비스-유출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의 부과 등

과징금의 부과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본문).

▹ 다만,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단서).

▪ 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2항 본문).

1.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각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고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가 1천만명 이상인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3항).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5항).

-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및 유출등의 규모
-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 개인정보 보호 인증,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의 협조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여부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0조의3제1항).

과징금의 납부

▪ 과징금 부과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0조의3제2항).

과징금의 감면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을 투자하고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6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0조의2제5항).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에 투자한 규모·비율 및 그 투자의 지속성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3에 따른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이행 정도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조직 및 인력 구성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 운영 내용 및 수준

4. 그 밖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추가적인 노력

▪ 보호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7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0조의2제6항).

1. 지급불능·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거나 산정된 과징금이 소액인 경우
4. 그 밖에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산금 징수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않은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9항).

독촉 등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0항).

과태료에 관한 특례

▪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6조).